

『산재예방요율제』적용에 따른 산재보험료 할인 금액(예시)

이 자료는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이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료
할인금액 예시표입니다.

이 표에서 제시한 금액은 상시근로자수 10인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참고자료이며,
산재보험료 할인 금액은 업종, 근로자수, 재해율, 임금총액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산재보험료 할인을 : 매년 20%씩 3년간 할인

종업종명	산재보험요율 (천분율)	근로자수	1년간 산재보험료	3년간 할인금액
식료품제조업	19	10	6,080,000	3,648,000
담배제조업	8	10	2,560,000	1,536,000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간)	13	10	4,160,000	2,496,000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0	10	6,400,000	3,840,00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42	10	13,440,000	8,064,000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4	10	7,680,000	4,608,000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11	10	3,520,000	2,112,000
화학제품 제조업	16	10	5,120,000	3,072,000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10	2,880,000	1,728,00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1	10	3,520,000	2,112,000
고무제품 제조업	21	10	6,720,000	4,032,000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29	10	9,280,000	5,568,000
유리 제조업	15	10	4,800,000	2,880,000
시멘트 제조업	26	10	8,320,000	4,992,000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32	10	10,240,000	6,144,000
금속제련업	11	10	3,520,000	2,112,000
금속재료품 제조업	33	10	10,560,000	6,336,000
도금업	17	10	5,440,000	3,264,000
기계기구 제조업	19	10	6,080,000	3,648,000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1	10	3,520,000	2,112,000
전자제품 제조업	7	10	2,240,000	1,344,000
선박건조 및 수리업	26	10	8,320,000	4,992,000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16	10	5,120,000	3,072,000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17	10	5,440,000	3,264,000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	9	10	2,880,000	1,728,000
수제품 제조업	15	10	4,800,000	2,880,000
기타제조업	27	10	8,640,000	5,184,000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연락처

일선기관명	관할구역	위험성평가 인정 업무 담당자	사업주 교육 업무 담당자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및 동작구	02-6711-2843	02-6711-2912
서울북부지사	서울특별시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및 노원구	02-3783-8316	02-3783-8355
강원지사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및 횡성군, 경기도가평군	033-815-1013	033-815-1058
강원동부지사	강원도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양양군 고성군, 영월군 정선군 및 평해군	033-8202-513	033-820-2552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051-520-0525	051-520-0563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052-226-0525	052-226-0564
경남지사	경상남도(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제외)	055-269-0554	055-269-0513
경남동부지사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055-371-7524	055-371-7512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및 함평군	062-949-8742	062-949-8711
전북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남원시 정읍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완주군, 진안군 및 무주군	063-240-8534	063-240-8523
전북서부지사	전라북도 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및 고창군	063-460-3626	063-460-3614
전남동부지사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및 보성군	061-689-4953	061-689-4912
전남지사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장흥군, 진도군 및 산안군	061-2888-704	061-288-8713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064-797-7502	064-797-7525
충북지역본부	인cheon광역시	032-510-0516	032-510-0584
경기지사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031-259-7126	031-259-7178
경기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고양시, 파주시, 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031-828-1915	031-828-1942
경기서부지사	경기도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및 시흥시	031-481-7517	031-481-7556
경기동부지사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및 양평군	031-785-3314	031-785-3359
경기중부지사	경기도 부천시 및 김포시	032-680-6547	032-680-6551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경상북도 영천시, 경산시 및 청도군, 군위군	053-609-0524	053-609-0575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 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경상북도 칠곡군(석 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다), 고령군 및 성주군	053-650-6833	053-650-6813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및 울진군	054-271-2035	054-271-2012
경북지사	경상북도 구미시,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봉화군, 예천군, 의성군, 영양군 및 청송군	054-478-8013	054-478-8063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보령시, 서산시,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부여군 및 태안군	042-620-5611	042-620-5673
충북지사	충청북도	043-230-7125	043-230-7116
충남지사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및 예산군	041-570-3425	041-570-3406

2017-안전-165



『근로자수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산재예방요율제로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조성 하세요!



산재예방요율제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01 적용대상

- 제조업으로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
 - ※ 일괄계속사업장은 각각의 개시번호별 상시근로자수의 합이 50명 미만인 경우 적용 가능
- 보험료 징수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

02 적용방법

- 사업주가 인정받을 수 있는 재해예방활동은 「위험성 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교육」 인정이 있으며, 각각의 인정 유효기간 동안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하여 산재보험료 징수

위험성평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활동

사업주교육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적으로 산재예방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

- ※ 관련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산재예방요율의 적용)
 -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0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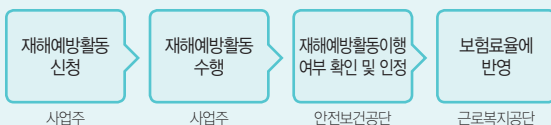
● 인정 유효기간 및 인하율

평가 및 교육	인정 유효기간	인하율
위험성평가 인정	3년	20%
사업주교육 인정	1년	10%

※ 요율 인하는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적용(일괄계산)

※ 사업주는 2개 재해예방활동 분야(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를 인정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해당 보험연도 적용 인하율을 각각 계산한 후 인하율이 높은 것을 적용

03 업무처리절차



「위험성평가」재해예방활동 인정 이렇게 받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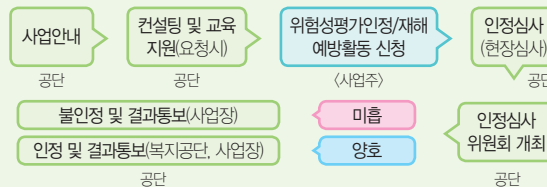
01 위험성평가 재해예방활동 신청 대상?

- 제조업 중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산재보험료율 20% 인하)
 - ※ 일괄계속사업장은 각각의 개시번호별 상시근로자수의 합이 50명 미만인 경우 적용 가능

02 위험성평가 재해예방활동 인정이란?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공단 심사원이 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한 후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이 재해예방활동으로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03 위험성평가 재해예방활동 인정절차는?



컨설팅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체 공정작업중 일부를 컨설팅 해드립니다.(30명 미만 사업장은 공단에서 무상지원)
※ 민간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도 됨

교육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사업주/평가담당자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또는 등록된 민간교육기관에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신청 위험성평가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제출하거나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을 통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을 하면 재해예방활동 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함.

04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을 시 혜택은?

-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3년)동안 산재보험료의 20%가 인하됩니다.(50명 미만 제조업에 한함).
-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기감독 대상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도 정한 사업장에 한함.
-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험성평가 인정 시 클린 보조금 1,000만원 추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교육」재해예방활동 인정은 이렇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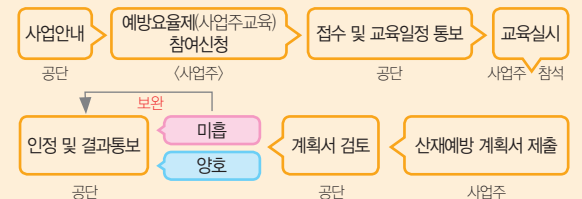
01 사업주교육 적용대상은?

- 제조업 중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본인(법인인은 대표이사)
 - ※ 교육 참석 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세요.

02 위험성평가 재해예방활동 인정이란?

-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재해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을 수립·제출하여 안전보건공단이 재해예방활동으로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03 추진절차는?



시행기관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교육센터) 및 지사(교육담당부서)에서 무료로 실시합니다.

신청방법 「재해예방활동 신청서(상시 근로자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를 작성하여 사업장이 속한 지역의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방법 ① 전년도 임금대장 사본 ② 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세무서 제출자료) ③ 전년도 산재보험 보수종액수정 신고서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방법 ①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가입신청서 ② 국민연금 당업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교육시간 및 내용 교육시간은 4시간이고, 교육내용은 안전의식 제고, 사업주의 산재 예방책임, 위험성평가 및 자체 산재예방계획 수립(실습) 등입니다.

04 재해예방활동 인정 시 혜택은?

-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1년)동안 산재보험료의 10%가 인하됩니다.
※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1년)동안에만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같음.
- 사업주는 산재예방요율제의 두 가지 재해예방활동(사업주교육, 위험성평가) 모두 참여 가능